

물리치료원 독립 개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
배 성 수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의료재활과
김 대 영
유외과의원 물리치료실 · 제일신경외과의원 물리치료실
남 성 우 · 박 환 진
김천대학 물리치료과
전 제 균

The Legal System for the Independent Practice of Physical Therapy

Bae, Sung-Soo, P.T., Ph.D.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College of Rehabilitation Science, Teagu University

Kim, Dae-Young, P.T.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Medical Rehabilitation, Taegu Social Welfare Center for Disabled Person

Nam, Sung-Woo, P.T.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Yoo Surgery Clinic

Park, Hwan-Jin, P.T.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Jae Il Neurosurgery Clinic

Jeon, Jae-Kyun, P.T., M.P.H.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Kimchun College

〈Abstract〉

To provide physical therapy service of good quality keeping people healthy and obtain structural reformation coping with the demands of opening medical service market to foreign intercourse on 21C, we should make legal system for the physical therapy practice. Thus we suggest tha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authorities should,

1. Exclude the provision of physical therapist from the classification of medical technician on the Medical Technician Law Article 2. and establish the independent Physical Therapist Law
2. Eliminate the provision of physician or dentist's guide the Medical Technician Law Article 1. or reform it to physician or dentist's request, so that physical therapists may have a independent practice, or
3. Add the provision of the physical therapy center to the Medical Technician Law, the enforcement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such as the provision of optometrist or dental technician.

Key words : Medical Technician Law, Physical Therapist Law

I. 서론

물리치료를 위한 의료기사법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전상자의 치료 및 재활 목적으로 외국인 물리치료사(Thekla B. Maw : 미국감리교 선교사)에 의하여 처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후였으며, 물리치료사의 양성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는 군부대 내에서 9개월 과정으로 처음 개설되었고, 1954년부터 1962년까지는 국립재활원(부산 동래 소재, 당시 정양원) 및 세브란스 병원 등 몇몇 종합병원에서 3개월의 단기 과정부터 2년 과정까지로 소수의 물리치료사를 배출해왔다. 물리치료사를 양성하는 정규 교육과정은 1963년 수도의과대학 병설의학기술초급대학(현재 고려대학병설 보건전문대학)에 물리치료과가 설립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전세일 등 1998). 1965년 10월 1일 물리치료사협회 창립총회 및 임원 선출로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출범했다. 1966년 5월에 제1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정관을 만들어 보사부 승인 제762호로 승인을 받게 되었다.

1967년 1월에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로 법인 등록을 하였고, 그로부터 6년이 지나 1972년 6월에 의료기사법 초안을 작성하여 그 당시 보건사회부에 제출하여 1973년 2월에 의료기사법이 만들어져 같은 해 9월에 시행령이 발표되고 10월에는 시행규칙이 발표되어 오늘에 이르르게 되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시대에 맞는 의료기사법이었으나,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은 현실과는 너무나 떨어져 있다. 협회가 태어난 지 33년이 되어 성인이 되었으며, 과거와는 비교 될 수 없을 만큼 물리치료사의 학제개편도 이루어져 대학 3년과 4년 학부 체가 있으며,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가 배출되고 있는 이 시점에 아직도 의료기사법 제4조 3항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자가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응하는 보건업무에 종사한 자도 국가시험을 응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현실에는 관심이 없다는 증거이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세계화란 바람을 타고 우리들 코앞에 다가온 의료개방의 압력은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이때 보건복지부의 전근대적 행정제도는 세계적인 조류에 역행하고 있다. 세계화란 모든 주체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체가 되는 사람이 세계화되기 위해 모든 제도

는 세계수준에 걸맞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세계적인 추세에 뒤떨어진 의료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전근대적 행정과 오늘날 세계화 추세에 맞지 않는 의료관계법령을 정비하여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기득권자와 가진자의 편에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특정 세력을 비호하는 의사중심의 관료주의 의료행정이 그렇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일찍이 모든 의료전문 직종의 특수성에 맞게 권한을 주어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반면(장정훈 등 1989, 김철용 1997) 우리는 아직도 의사들만이 국민의 모든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대는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의료행위 자체도 전문화 세분화 분업화되어 의료인 상호간 역할분담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만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위계적 권위체제와 독점화에서 벗어나 자유경쟁체제에 의한 질적 수준을 세계화시키고 관련된 모든 집단구성원에게 비전을 주기 위해서라도 해당되는 전문직종 모두에 권한을 나누어주며 또한 의료 소비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 견제보다는 협력하는 팀워크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1998년 3월 현재 물리치료면허 소유자는 13,035명이며 그중 6,000여명 이상이 넘는 물리치료사가 전업 아니면 쉬고 있는 상황이다(대한물리치료사협회 1998자료제공). 특히, 임상경험(5년이상)을 많이 터득한 물리치료사가 병·의원에서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을 하게될 때(김인숙 1990, 송주영 1996) 결국 그 피해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400여만 명의 장애인과 고통을 호소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며, 한 전문가가 배출 될 때까지 경제적 부담을 졌던 일반 부모들의 노고와 수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난 손실이 따르고, 불필요한 주사나 투약으로 인한(통증이 심한 환자를 제외하고는 주사나 약을 환자들은 기피하고 있다)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물리치료협보 1994). 아울러 농어촌 사람들이나 직장 근로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가까운 곳에서 시간에 관계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어야 하며 현재 우리사회의 최대 이슈인 실업자를 줄이고 임상경험이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국민보건향상에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의료법 안에서 그 업무행위의 특수성을 가진 역할에 있어서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점은 물리치료를 원하는 환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거친 후 치료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조산소, 약사, 치과기공사, 안정사 등 국가로부터 면허나 자격을 인정받은 모든 전문인들이 그들의 직업수행상의 영업권을 가지고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직업 수행을 하고 있는데 반해 똑같은 면허를 소지하고 오랜 경험을 가진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원 개설이 허용되지 않아 더 이상 자신의 직업을 계속 수행 할 수 없어 타 직종으로 이직(박지환 등 1989, 물리치료협보 1995)해야 하거나 실업자가 되는 더 이상의 불행은 막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전업을 하지 않고, 경험 많은 물리치료사로서 국민의료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시 하려고 한다.

II. 물리치료사에 관한 법률

1. 한국의 제도와 상황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최초로 언급된 법은 1963년 7월 31일 "의료보조원법"이 제정 공포되어 법률 1308호에 의거하여 자격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보건복지부(당시 보건사회부)는 여기에 필요한 시행규칙인 보건복지부령(당시 보건사회부령) 150호를 1964년 12월 17일에 제정하여었다. 이러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라 1965년 4월 22일에 국립보건원에서 관장하는 최초의 물리치료사 국가면허시험을 치루게 되었다. 그 후 1973년 9월 4일 대통령령 6864호로 "의료보조원법"이 폐지되고 "의료기사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령(당시 보건사회부령) 427호에 의하여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현재 의료기사법은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12호로 소폭 개정된 것이다. 이 법에는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무기록사"라 한다), 시력 교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안경사"라 한다)의 자격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의료기사법 제1조). 의료기사의 종별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의료기사법 제2조).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규정된 업무를 행한다(동법시행령 제2조). 위의 조항에 의해 의료기사에 속하는 물리치료사는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게 되 있다.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제 및 기구치료,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 약품의 사용. 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업무에 종사한다(동법시행령 제2조 1항 3호). 만약 물리치료사가 위의 규정에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는 의료기사 등의 품위손상 행위로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6개월 이내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의료기사법 제22조). 이상과 같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하여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독립적인 업무행위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현실이다.

2. 미국의 제도와 상황

물리치료의 법적 제도가 가장먼저 시작된 나라는 미국과 영국으로 그중 미국의 물리치료는 1918년에 시작되어 80년에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40년부터 4년제 학부과정으로 출발하여 석사과정 50개교 박사과정 20개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1990년부터 세분화된 영역으로 즉, 심폐물리치료, 전기생리물리치료, 노인물리치료, 신경물리치료, 정형물리치료, 소아물리치료, 스포츠물리치료 등 7개의 전문분야별로 나누어져 병원뿐만 아니라 개인 물리치료원, 재활센터, 학교, 가정건강 위생소, 대학연구소 등 물리치료의 일반적 수요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자유로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물리치료사들의 활동은 1957년 Nebraska주에서 독립된 법이 최초로 시행되어 의사의 의뢰 없이도 독자적으로 물리치료원을 운영해오고 있다(송주영 등, 1996). 이것을 "직접접근 방식"(Direct access)으로 명명하였고 이는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의뢰 없이 직접 환자를 평가, 치료하는 방법이다. 1973년 APTA(Americ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대의원회는 의사의 의뢰 없이 초기평가를 인정하는 환자 의뢰방법(methods of patient referral)법을 통과시켰고, 1978년에는 RC42-78이라는 독립활동(independent practice)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직접접근방식을 인정할 수 있는 교과과정과 실행중인 시간배정의 변화, 물리치료사의 교육프로그램 인정기준의 개정, 그리고 협회 운영에 대한 입법기초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1989년에는 New Mexico, North Dakota, Wisconsin주에서도 직접접근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1990년부터는 미국전역의 41개주가 직접접근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중 24개의 주가 의사의 의뢰 없이 이루어지는 직접접근방식에 의한 물리치료 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17개주는 의사의 의뢰

에 의한 평가와 치료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Ⅲ. 물리치료사의 독립된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 제언

1. 현행 의료기사법 내에서 개정

물리치료사의 독자적 업무수행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사법 제1조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조항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세계 여러 선진국은 이미 물리치료 행위의 특성에 맞는 법률 제도로 마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현실에 맞지 않은 현행 의료관계 법령을 우리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물리치료 행위를 독립적 영역으로 인정하고 의사의 지도가 아닌 물리치료 의뢰서에 의한 독자적인 면허 행위를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표 1과 같

이 현행 의료기사법 개정을 위한 (안), 표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표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표4. 물리치료원 개원 등록신청서(안)을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독립된 물리치료법 제정

법체계적으로 물리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닌 유사의료행위로 분류되어(송주영 등, 1996) 의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약사와 같이 의사의 처방이나 의뢰서에 의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실정에서 보건당국과 관계당국은 국내 물리치료사를 위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자유로이 치료의 질로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기사법 제 2조 의료기사의 종별에서 물리치료사를 제외시키고 물리치료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독립된 개별 법에 따라 그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법"(안)을 표 5와 같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 규정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무기록사"라 한다), 시력보정용안경의조제 및 판매를 주된업무로 하는자(이하 "안경사"라 한다)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자(이하 "의무기록사"라 한다), 의사의 의뢰로 물리치료의 주된 업무를 하는자(이하 "물리치료사"라 한다), 시력보정용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업무로 하는자(이하 "안경사"라 한다)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분 개정 삽 입
제12조 【안경업소 및 물리치료원의 개원등록등】		⑤ 물리치료사가 아니면 물리치료원(이하 "물리치료원"이라 한다)을 개원할 수 없다. ⑥ 물리치료사는 1개의 물리치료원만을 개원할 수 있다. ⑦ 물리치료원을 개원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기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⑧ 제7항규정에 의하여 물리치료원을 개원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항 신설 삽 입

조 규정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3조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안경업소의 개원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안경업소 및 물리치료원의 개원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분개정 삽입
제 14 조 【과대광고 등의 금지】		④ 물리치료원은 물리치료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⑤ 물리치료원 또는 물리치료가 아닌자는 물리치료에 관한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⑥ 물리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 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항 신설 삽입
제 22 조 【자격의 정지】		① 항 4. 물리치료원의 개원자가 될 수 없는자에게 고용되어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행할 때	항·호 신설 삽입
제 23 조 【시정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업소의 개원자가 제12조 제4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업소의 개원자가 제12조 제4항, 물리치료원의 개원자가 제12조 제8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부분개정 삽입
제 24 조 【개원등록의 취소 등】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물리치료원의 개원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물리치료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개 이상의 물리치료원을 개원 한때 2.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한때 3. 물리치료가 아닌 면허가 없는 자로하여금 물리치료를 하게 한때 4. 이 법에 의하여 물리치료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물리치료원의 개원자가 물리치료 업무정지 기간중 업무를 계속 한때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항·호 신설 삽입
제 30 조 【벌 칙】		① 5. 제12조 제5항 규정에 위반하여 물리치료사의 면허없이 물리치료원을 개원한 자	호 신설 삽입
제 31 조 【벌 칙】		5. 제12조 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개 이상의 물리치료원을 개원한 자 6.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리치료원을 개원한 자	호 신설 삽입
제 34 조 【물리치료 기록부 등】		①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의뢰서에 물리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 ①항 규정에 의한 물리치료의뢰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조 신설

표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조 규정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 2 조 【의료기사·의무 기록사 및 안경사·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 등】	① 3.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 약품 의사용, 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에 종사한다.	① 3.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물리치료의뢰서에 의하여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 약품의사용, 침구, 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한다.	부분개정 삼 입

표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조 규정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 27 조 【물리치료원의 개원등록신청 등】		① 법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리치료(이하 "물리치료원"이라 한다)를 개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원자 및 종사할 물리치료사 면허 증서본(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조 신설
제 28 조 【물리치료원 등록대장과 등록증】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리치료원개원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물리치료원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14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개원등록번호 및 개원등록연월일 2. 개원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개원하고자 하는 물리치료원의 명칭과 그 소재지	조 신설
제 29 조 【물리치료원의 물리치료 시설 기준 등】		① 물리치료원개원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당해 치료원의 바닥면적은 45.15제곱미터 이상이여야 한다. 1. 표층열치료 2. 심층열치료 3. 자외선치료기 4. 파라핀욕 5. 견인치료기 6. 전기자극치료기 7. 간섭파전기자극치료기 8. 적외선치료기	조 신설

표 4. 물리치료원 개원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물리치료원 개원 등록 신청서		처 리 기 간	
		7일	
사 업 장	명 칭		
	소 재 지		
개 원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면 허 중 별		면 허 번 호
<p>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리치료원 개원등록 신청을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개 원 자 ○ ○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원자 면허사본 1부 2. 시설, 장비 개요서 1부 3. 주민등록 등본 1부 			

표 5. 물리치료사법(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국민보건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물리치료사)

이 법에서 물리치료사라 함은 물리치료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 3 조 (물리치료원)

이 법에서 물리치료원 이라 함은 물리치료사가 공중 또는 다수특정인을 위하여 유사 의료업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제 4 조 (물리치료사면허)

물리치료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물리치료사 국가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서 물리치료사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자에 한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을 거쳐 그 면허를 할 수 있다.

1. 물리치료학을 전공하는 국내 3년제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제1호와 동등한 외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물리치료사 면허를 받은 자.

제 5 조 (결격사유 등)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리치료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병자, 정신지체자
2. 마약 기타 유독 물질의 중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리치료사로서 부적합한 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 중에 있는 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그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면허를 유보한다.

제 6 조 (국가시험)

- (1) 물리치료사의 국가 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시행한다.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국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 (응시자격의 제한)

- (1) 제5조 제1항 각호외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할 수 없다.
- (2)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하는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제 8 조 (면허의 조건 및 등록)

-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보건 및 건강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에 있어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할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3)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9 조 (신고)

물리치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10조(물리치료원의 명칭)

물리치료원의 명칭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11조(과대광고의 금지)

물리치료원은 물리치료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제 12조(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보건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리치료원 또는 물리치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 13조(개원)

- (1) 물리치료사는 이 법에 의한 물리치료원을 개원하지 아니하고는 물리치료 업무를 행할 수 없다.
- (2) 제1항의 물리치료원을 개원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개원된 물리치료원이 그 개원장소를 이전하거나 그 개원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항과 같다.

제 14조(시설기준 등)

물리치료원의 시설, 장비의 기준, 규격, 물리치료사의 정원 기타 물리치료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15조(휴업, 폐업의 신고)

물리치료원의 개원자는 물리치료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IV. 기대효과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의 표 1, 2, 3, 4, 5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물리치료 행위를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하고 물리치료가 의사의 지도가 아닌 물리치료 의뢰서에 의한 독립적인 면허행위를 법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가능하게 될 때 국민보건 및 의료향상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인 의료기관의 증설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확대, 의료보험 체제의 내실화, 의료개방에 따른 경쟁체제의 확립 등 여러 차원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의료기관의 채용기피나 열악한 근무조건 때문에 실직하거나 이직하는 현실에서 물리치료원의 독립개원허용은 전문인력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서비스에 더욱 전념하게 함으로서 국민보건 보호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단 한번의 사의 물리치료 의뢰서로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저렴한 비용(의료기관소속 물리치료실 이용 시 초진 후 물리치료만 받는 데도 계속 재 진료 비용 부담해야함)으로 쉽게 물리치료를 받게 됨으로서 환자들에게 치료비용의 절감과 그 동안 도심의 편중된 의료기관의 물리치료실을 이동의 불편 때문에 치료를 기피해 오던 400만 장애인들에게 치료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게 되고, 아울러 의료비 과다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보험공단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현재 전국 의료기관의 약 18%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1996년 송주영 등) 농·어촌 오지의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 수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물리치료원의 독립개원허용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오지의 의료혜택의 폭을 넓혀가게 될 것으로 확실하다. 한 조사 연구에 의하면 환자들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중 가장 큰 것은 도시에 집중된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과 치료전 대기 시간으로 이것이 길면 길수록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김선엽 1990)고 보고하였다. 실제 집에서 출발하여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접수를 하고 물리치료 접수를 하고 치료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시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물리치료원의 독립개원은 반드시 필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결 론

물리치료가 우리나라에 보급된 지 33년이 되었고 물리치료를 양성하는 대학이 28개교에 입학정원이 1,600명이 되며 학제도 3년제와 4년제 대학과 2개의 대학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개원하여 명실공히 학제의 틀을 완고히 갖추었으며 임상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전문치료 영역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각 전문 분야별 학회가 구성되어 세분화된 영역별 연구·발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과거에 비교가 되지 못할 정도로 물리치료의 눈부신 발전에 대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동안 물리치료원 개원에 관련된 이야기 때마다 문제시되었던 학제도 개편되었고 개원을 위한 주변의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상황이라 물리치료가 물리치료원 개원으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 할 수 있겠다.

21세기 범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무한경쟁체제에 의한 자유개방 물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물리치료가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의료수요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물리치료원 독립개원을 위한 법적 제도장치로 표 1, 2, 3, 4, 5와 같이 제시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 또는 독립된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하여 현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맞게 의료개혁을 단행함에 있어 보건복지부 관계 당국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것이다.

2. 제 언

모든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호를 위한 양질의 물리치료 서비스 향상과 21세기 범세계적으로 밀려오는 의료개방에 탄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위한 제도적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 장치는 필연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으로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 및 관계당국에 제안하고자 한다.

1. 의료기사법 제2조 의료기사의 중별에서 물리치료를 제외시키고 독립된 개별법인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하든지

2. 의료기사법 제1조에 명시된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된 부분에서 지도를 삭제하거나 의뢰로 개정하고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독립된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3. 안경사 혹은 치과기공사 처럼 의료기사법과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물리치료원에 관한 규정을 첨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문 헌

1. 김선엽 : 외래물리치료실 이용 환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조사. 대한물리치료사학회지. 11권 2호, 1990
2. 김인숙 : 물리치료 의무기록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물리치료사 협회지. 11권 1호, 1980
3. 김철용 : 물리치료의 발전과 전망. 대한물리치료사 학회지. 4권 2호, 1997
4.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물리치료협보 제84호, 1994
5. 대한물리치료사협회. '94 전국물리치료사 추계학술대회 특강자료집, 1994
6.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중앙회 자료, 1998
7. 대학서림 : 의료관계법규. 1997
8. 박지환, 정낙수, 송영화 : 국내물리치료사의 현황분석과 그 효율적 활용방안. 대한물리치료사협회지. 10권 2호, 1989
9. 송주영, 김형남, 조귀순 : 물리치료사 자립개원. 대한물리치료 학회지. 18권 1호, 1996
10. 장정훈, 신흥철 : 물리치료사 인력수급전망. 대한물리치료사 학회지. 10권 2호, 1989
11. 전새일, 권혁철 : 재활치료학, 계축문화사, 1998